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9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927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합605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규

피고, 피항소인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론 종결2022. 3. 17.

판결 선고2022. 4. 28.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합60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130,205,2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피고들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69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 C는 원고에게 130,205,2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일부 고치고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V의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타당하고"부터 제14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피고 C가 2016. 12. 31. 이후에도 V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V과 구두 합의하였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인 V의 서면에 의한 증언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인 V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갑 제9호증은 V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인데, 그 기재 중 피고 C가 V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부분은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부분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V은 2016. 11. 말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뒤에도 2016. 12. 31.이 지나도록 토목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는 2017. 2.경 V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면서 V으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통장을 돌려받았다.

3.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 C는, 원고가 V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V과 공모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부인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이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V의 피고 C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행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고 C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로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마용주

판사임종효

판사주선아